



국방시설본부

경상시설단

(주)세일

종합기술공사



## 기술교류합의서

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과 (주)세일종합기술공사는 양 기관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### 제1조 (목적)

본 합의서는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(이하 “경상시설단”이라 한다)과 (주)세일종합기술공사(이하 “세일”이라 한다) 간의 기술교류와 상호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.

### 제2조 (운영원칙)

- ① 본 합의서에 명기된 사항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- ② 본 합의서에 명기된 사항으로서 세부 사항이 필요하거나,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의 제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.

### 제3조 (협력 분야)

경상시설단과 세일은 각 기관의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상호협력하며 구체적인 수행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. 다만, 국가 공무원법, 군인사법, 국유재산법 및 군사보안법무훈령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협력 및 추진이 제한된다.

- ① 워크숍 및 세미나 등 학술행사의 공동개최
- ② 국·내외 설계 및 시공사례 공동연구
- ③ 양 기관의 필요에 의한 교육지원 및 자문
- ④ 기타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한 상호 협력사항

### 제4조 (비밀유지)

- ① 양 기관은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기간 중 취득한 상대방의 중요 사항 및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, 상대 기관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② 양 기관의 국가 및 군사기밀에 관련된 자료의 관리, 보관 등은 “군사보안법무훈령”에 따르며, 이는 합의서의 효력이 종료한 경우에도 동일하다.

## 제5조 (해지)

- ① 본 합의서는 경상시설단과 세일의 합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늦어도 해지 예정일 1개월 전에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대방은 별도의 조치없이 즉시 합의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.
  - 가.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  - 나. 전쟁, 사변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이 합의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방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, 양 기관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

## 제6조 (효력발생 및 유효기간)

- ① 본 합의서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2년간 유효하다. 다만,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한 기관의 서면통보가 없으면 매 2년마다 자동 갱신된다.
- ② 본 합의서의 내용은 양 기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## 제7조 (연락처)

이 합의서에 관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.

### ①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

(우) 706-79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903 사서함 96-10호  
계획운영과 (053-750-351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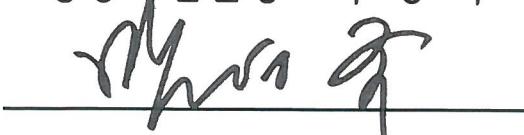
### ② 주식회사 세일종합기술공사

(우) 150-8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87  
항만사업본부 (02-840-5000)

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,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4년 11월 17일

국방시설본부  
경상시설단장 박영국



(주) 세일 종합기술공사  
대표이사 와호순

